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
------	-----

제출연월일: 2002. 4. 6.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2002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조문 신설(안 제25조의 2)
- 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36조)
- 다. 농업소득세 신고납부일자 변경(안 제50조)
- 라. 농업소득세 가산세 조문의 자구 수정(안 제61조)
- 마.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자 변경(안 제90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세정13400-10033(2002.1.7) 2002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당면사항
통보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제2002 - 118호(결과, 의견내용 없음)

4. 본문 : 붙임참조.

고성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 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 승계인
3. 연장자

제50조(신고와 납부) 제1항중 “1월 31일까지”를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가산세) 제2항제3호의 “환급”을 “환부”로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건축물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매년 7월 16
일부터 7월31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25조의 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u> <u>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u> <u>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u> <u>31일까지로 한다.</u></p>
제36조(납세의무자)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p><u>제36조(납세의무자) ① -----</u> ----- -----.</p>
(신 설)	<p><u>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u> <u>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u> <u>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u> <u>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u> <u>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u></p> <p><u>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u> <u>2. 호주 승계인</u> <u>3. 연장자</u></p>
제50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u>1월 31일까지</u>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 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p><u>제50조(신고와 납부) ① -----</u> ----- <u>5월 31일까지</u> ----- ----- -----.</p> <p><u>② (현행과 같음)</u></p>

현 행	개 정 안	
<p>제61조(가산세) ① (생 략)</p> <p>② (생 략)</p> <p>1. 2 (생 략)</p> <p>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 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u>환급을</u> 받는 경우</p> <p>4. (생 략)</p> <p>③ (생 략)</p>	<p>제61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환부를</u> -----.</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생 략)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현행과 같음)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축물	<u>매년 5월 1일</u>	<u>매년 6월 16일</u> <u>~6월 30일</u>
토 지	(생 략)	(생 략)